

『2022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 지원대상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4월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경영개선 사업화) 경영문제 진단과 경영 피보팅을 통해 폐업에 이르기 전 선제적 경영정상화 지원
- (재창업 사업화) 소비트렌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확보된 유망·특화·융복합 분야로 재창업 유도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2.11.30.(7개월 내외)

□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영개선사업화	• 경영위기 소상공인	• 경영교육 + 경영진단개선전략 수립 + 경영개선자금(최대 2천만원)
재창업사업화	• 폐업 소상공인	• 창업교육 + 전담 멘토링 + 재창업자금 (최대 2천만원)

* 세부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

□ 모집규모 : 총 2,200명 내외

지원대상	사업화지원 유형	지원규모
경영위기 소상공인	경영개선 사업화	1,000건
	혁신 재창업(전 업종)	520건
폐업 소상공인	특화 인큐베이팅	600건
	e-커머스 공유주방	80건

* 모집 및 선정 규모는 권역별 주관기관 선정 현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2. 4. 13.(수) ~ '22. 5. 3.(화), 17:00 (기한 엄수)

* 신청 마감시간에는 사용자 폭주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요망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참고3] 소상공인 확인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써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참여 제한대상

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경영개선 사업화)
2.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으로 재창업 하려는 자(재창업 사업화)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 무 완납 필수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8. '21년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5%)
10.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참여 제한대상 9번항목: 주관기관별 전체 선정 규모 중 동일브랜드 2%이내, 가맹점사업자 5%이내 선정가능

1 경영개선 사업화

□ 신청자격 : ①매출액 감소 또는 ②저신용 소상공인 중 경영개선 의지가 높고 사업성이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22.4.13)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참고2, 참고3] 확인필수

▶ [참고4]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매출액) 전년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자

② (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79점 미만자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구분	개업시기 ^①	감소 판단 기준	매출액 감소 확인
전년대비 20%감소	~'20년 말	'20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1년 중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2년 1분기 매출액 확인가능한 서류 (카드 현금 매출 증빙자료, POS매출액 합계자료 등)
	'22.1.1~	매출감소 대상 제외	
3년간 지속감소	~'19년 말	'19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년차) '20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3년차)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0년 중	'20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년차)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3년차) '22년 1분기 매출액 확인가능한 서류 (카드·현금 매출 증빙자료, POS매출액 합계자료 등)
	'21.1.1~	매출감소 대상 제외	

①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 분기별 신고매출액은 월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20년 7월 개업 사업체(6개월 영업) → '20년 매출액은 신고매출액의 2배)

2 재창업 사업화

□ 신청자격 : 재창업 의지와 성공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을 하여 공고일('22.4.13) 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사실증명_총사업자 등록내역) * [참고2, 참고3] 확인필수

▶ 협약기간 내 사업화(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 완료가 가능한 자

* e-커머스 인큐베이팅의 경우 사업화 기간 내 '통신판매업신고증' 제출가능한 자

▶ 폐업한 업종이 [참고4]의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분야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가능

▶ 폐업 후 유망·특화·융복합* 분야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기존 아이템과 차별화되어 트렌드와 사업 경쟁력이 확보된 분야

▶ 혁신 재창업(전업종)과 인큐베이팅(특화업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3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기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진단표 ■ 사업신청서 ■ 사업 참여 협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서 	http://hope.sbiz.or.kr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1> 자기기술역량서 ■ <서식2> 사업계획서 	http://hope.sbiz.or.kr 서식 다운로드 → 작성 → 파일 업로드		
	납세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①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소상 공인 확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활용 → FAX수신 ②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③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경영개선: '21년도 1개년, 재창업: 폐업 직전년도 1개년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경영개선 사업화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공통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선택 (택 1)	▪ (매출감소) 매출액 확인서류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저신용자) 신용점수 확인서류	- 단, '22년 1분기 매출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 직접제출(카드·현금 매출자료, POS매출액 합계자료 등) ① 개인신용평가기관 'NICE평가정보·신용보고서' ② 본인확인 가능하며 신용점수 기재된 화면 캡처본 * 성명·신용점수·조회일자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 ** 저신용자인 경우, 사업화 자금(국비)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인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제한으로 미 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재창업 사업화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공통	▪ 폐업사실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공단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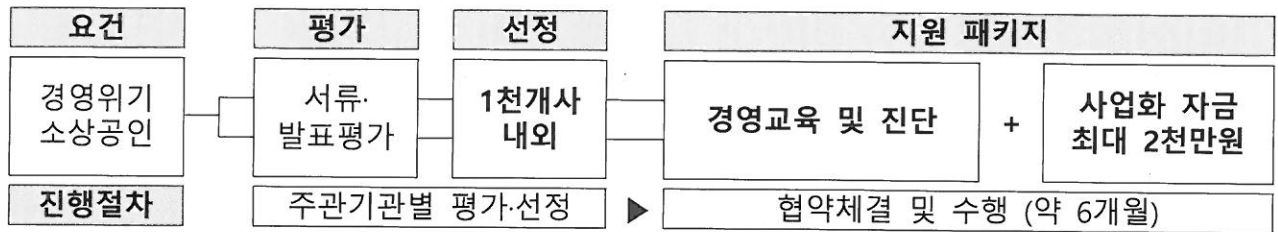
지원내용

*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1 경영개선 사업화

□ 지원규모 : 총 1,0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경영교육 + 경영진단 + 경영개선 자금(최대 2천만원)



- (경영교육)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필요한 피보팅 전략 및 사례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등 경영교육(총 32h)
- (경영진단) 분야별(경영·투자·판매 등)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컨설팅(최대 3명)을 통해 문제진단·해결을 진행하고 「경영개선 이행전략」 수립

2 재창업 사업화

□ 지원규모 : 총 1,2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재창업 교육 + 멘토링 + 재창업 자금(최대 2천만원)



* 혁신 재창업(전업종)과 인큐베이팅(특화업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창업교육) 폐업 원인분석, 창업 실무, 경영방법, 비즈니스 모델 설계, 아이디어 검증 등 재창업 교육(총 32h)
- (멘토링) 전담멘토를 통해 재창업 계획 수립, 수시자문, 사업화 이행상황 확인 등 사업화 쏠과정의 멘토링 (최대 6개월, 12회 내외)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 자금 집행

○ (사업화 자금) 총 사업비의 50%(최대 2천만원)이하 국비지원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자부담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50%(20백만원) 이하	총 사업비의 15%(6백만원) 이상	총 사업비의 35%(14백만원) 이하

* 현물은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 자금 집행비목 >

정부 지원금	자기부담금		지원항목	지원내용
	현금	현물		
○	○	X	인증평가	지재권, 인증취득(HACCP 등), 제품의 시험성적 의뢰 비용
			매장 모델링	사업자 소재지 상의 사업장 인테리어 등 내·외부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국고보조금 총액의 최대 50%까지 편성 가능)
			브랜드 개발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개선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마케팅 홍보	판로개척·고객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스마트·디지털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온라인 판로	상품화 한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비용
X	X	○	인건비	대표 및 직원(채용/협약 전 기 고용) 인건비 - (지원금액) 1인 1개월 최저임금 수준 191만원* 이내 *약 191만원 = 최저임금 9,160원(1H)×월209시간(주40H+주당유급휴휴8H)
			사업장임차료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확보에 대한 비용
			시설·설비	기성품 또는 제작 가능한 장비, 집기 등 구입비
			재료비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소모적인 재료(현물 최대금액의 50%까지 인정)

* 특화 인큐베이팅(공유주방 및 e-커머스)의 경우 하단 별도의 지원내용 참고

4 지원대상 선정

□ 평가절차 및 일정(안)

- 사업운영에 따른 일정은 사업화 지원 일정과 동일하게 추진

신청·모집	선정평가		최종선정 및 협약	사업화지원
	1차	2차		
신청서류 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선정안내 및 협약체결	권역·사업별 사업화추진
공단 홈페이지	주관기관		공단 ↔ 주관기관 ↔ 소상공인	주관기관
'22.4.13~5.3	'22. 5월 중		'22. 5월 중	'22.5월~11월

*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사업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20% 이내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 **평가기준** :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 **선발통보** : 주관기관별 개별안내

□ 심사항목 및 배점 (서류평가)

구분	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적격	자격요건 검토		- 참여제한대상 및 신청제외요건 검토	합/不										
경영개선	업력	정량	- 사업장 운영기간(현재 신청 사업장에 한함) <table border="1"> <tr> <td>운영기간</td> <td>5년 초과</td> <td>3년초과~5년이하</td> <td>3년 미만</td> <td>1년 미만</td> </tr> <tr> <td>배점</td> <td>20</td> <td>15</td> <td>10</td> <td>5</td> </tr> </table>	운영기간	5년 초과	3년초과~5년이하	3년 미만	1년 미만	배점	20	15	10	5	20
	운영기간	5년 초과	3년초과~5년이하	3년 미만	1년 미만									
	배점	20	15	10	5									
	신청자 역량	정성	- 경영개선 의지(추진의지, 책임감 등) - 신청동기 및 목표 설정에 대한 평가	20										
	경영개선 아이디어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 - 기존 사업아이템의 확장 및 성장가능성	20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성 - 자기부담금 확보 현황 및 조달방안 - 사업비 편성내역의 타당성 - 경영개선 실행준비 정도 등	40										
자격증	가점		- 운영중인 사업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10										
계				110										
재창업(인큐베이팅)	폐업경과연수	정량	- 폐업 경과연수(직전 사업장 폐업일 기준) <table border="1"> <tr> <td>기간</td> <td>1년 이하</td> <td>1년 초과~3년 이하</td> <td>3년초과~5년이하</td> <td>5년초과</td> </tr> <tr> <td>배점</td> <td>10</td> <td>8</td> <td>6</td> <td>4</td> </tr> </table>	기간	1년 이하	1년 초과~3년 이하	3년초과~5년이하	5년초과	배점	10	8	6	4	10
	기간	1년 이하	1년 초과~3년 이하	3년초과~5년이하	5년초과									
	배점	10	8	6	4									
	직전 사업장 운영기간	정성	- 재창업 의지(추진의지, 책임감 등) - 신청동기 및 목표 설정에 대한 평가	10										
	창업자 역량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 - 재창업 사업아이템의 확장 및 지속가능성	20										
	재창업 아이디어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성 - 자기부담금 확보 현황 및 조달방안 - 사업비 편성내역의 타당성 - 재창업 실행준비 정도 등	40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성 - 자기부담금 확보 현황 및 조달방안 - 사업비 편성내역의 타당성 - 재창업 실행준비 정도 등	40										
자격증	가점	- 재창업 예정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10											
계				110										

□ 심사항목 및 배점(발표평가)

구분	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공통	정성	신청자 역량	- 지원동기 및 목표의 명확성 - 경영개선(재도약) 및 재창업 가능성 - 경영마인드(경영의지, 열정, 적극성 등)	20
		지원적합성	- 목표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준비도(관련 자격증 소지 등) - 신청자의 사업추진 의지(개선노력도 등) - 사업 환경의 이해도	30
		사업 아이템 적절성	- 사업계획의 현실성 - 경영개선·재창업 아이템의 구체성 - 사업 아이템의 참신성 및 독창성	30
		성장가능성	-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장가능성	20
		계		

○ 정성평가 배점 기준

* 각 구간별 15%

배점 \ 단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40점	40	34	28	22	16
30점	30	25.5	21	16.5	12
20점	20	17	14	11	8
10점	10	8.5	7	5.5	4

□ 유의사항

-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대상 미확인(연락불능, 미숙지 등) 으로 인한 불이익(미선정, 선정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선정통보 후, 주관기관이 정한 자부담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미제출한 경우, 사업취소로 간주하며 차 순위 지원대상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사업비(국비 및 자부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운영지침 및 편람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선정대상자는 협약 기간 내에 사업화를 완료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지출에 대해서는 불인정됩니다.
- 협약기간 내 폐업(경영개선) 및 협약기간 내 창업 미완료(재창업)의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교부 및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수 등의 제재 조치 및 민·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관련 문의(경영개선·재창업)

지역	주관기관명	문의처
서울(2곳)	에스케이 플래닛(주)	02-6119-3711
	한국표준협회	02-6240-4788
경기(2곳)	한국표준협회(경기강원지역본부)	031-546-6036
	(사단)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02-701-7776
인천(1곳)	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인천캠퍼스)	032-764-8722
대전·세종(1곳)	한국표준협회(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70-7888-2000
전북(1곳)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063-711-2141, 2151
광주·전남·제주(1곳)	(주)세종경영연구소	070-5184-5593
충북(1곳)	재단법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	043-230-9764~5, 9762
충남(1곳)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	041-354-8748
부산(1곳)	한국표준협회(부산지역본부)	051-900-0361
대구·경북(1곳)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1833-7113
경남(1곳)	경남신용보증재단	055-715-5139, 5149

- 강원, 울산 등 주관기관 미선정 지역은 인접지역으로 선택가능

○ 사업관련 문의(특화 인큐베이팅)

구분	주관기관명	문의처
공유주방	주식회사 위대한상사	02-556-5777
e-커머스	에스케이 플래닛(주)	02-6119-3711
	주식회사 위메프	02-3402-9217

참고1 지역별 주관기관 교육장 현황

□ 경영개선·재창업

지역	주관기관명	교육장 주소
서울(2곳)	에스케이 플래닛(주)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2 프론트원 4층 SK플래닛 T아카데미(공덕역 4번 출구, 도보 1분거리)
	한국표준협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경기(2곳)	한국표준협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한국나노기술원 10층
	(사단)한국서비스 표준진흥원	경기 북부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 20, 5층
		경기 서남 : 서울시 금천구 서부셋길 638, 4층
경기 동남 : 서울시 송파구 문정로 246, 1층		
인천(1곳)	청운대산학협력단(인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 113, 518호
대전·세종(1곳)	한국표준협회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6층
전북(1곳)	(재)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164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광주전남제주(1곳)	(주)세종경영연구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339 (광주과학기술시술진흥원내)(대촌동 958-3)
충북(1곳)	재단법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진흥원 지하1층 연수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50)
충남(1곳)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산단7로 201호
부산(1곳)	한국표준협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16 교원빌딩 11층
대구·경북(1곳)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가람평생교육원(대구 중구 달성공원로8길 15) 달성공원역 3번출구에서 286m
경남(1곳)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 컨벤션센터 4층

□ 특화 인큐베이팅

구분	주관기관명	교육장 주소
공유주방	주식회사 위대한상사	서울시 서초구 남대로311, 드림플러스강남 회의실
e-커머스	에스케이 플래닛(주)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2 프론트원 4층 SK플래닛 T아카데미(공덕역 4번 출구, 도보 1분거리)
	주식회사 위메프	서울 강남구 역삼로 25길32

참고2

소상공인 기준 (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품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3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① 중 소상공인^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③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③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③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①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참고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앞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1.12.) (3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

표준산업분류	업종
	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86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별첨1] 지역별 주관기관 모집공고

□ 인천 :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인천캠퍼스)

모집규모	경영개선	40명	재창업	20명	총합	60명
관할기관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인천캠퍼스)		문의처		032-764-8722	

○ 모집일정

신청접수 '22.4.13(수)~5.3(화)	»	서면·대면평가 '22.5월 중	»	선정 및 협약 '22.5월말~6월초	»	사업화지원 협약일~11.30(수)
-----------------------------------	---	----------------------------	---	-------------------------------	---	------------------------------

○ 지원 특화프로그램

경영개선사업화	재창업사업화
외식업 스마트스토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외식업 스마트스토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소매업 하이브리드스토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소매업 하이브리드스토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분야별 전문컨설턴트 매칭 지원	분야별 전문컨설턴트 매칭 지원
HACCP 인증프로그램 운영	힐링캠프 운영(심형래의 실패와 재기)
	HACCP 인증프로그램 운영

○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경우, 필수교육+전문가컨설팅+사업화지원이 패키지로 일괄 지원됨
- 경영개선사업화=온라인교육(24시간)+워크샵(8시간)+사업화지원 컨설팅(5월~10월) 이수 해야함
- 재창업 사업화=집합교육(22시간)+힐링캠프(10시간)+사업화지원 컨설팅(5월~10월) 이수 해야함

* 교육생 주차 가능 - 교육장 주차 가능 대수 - 100대

※ 본 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페이지에 첨부파일로 등록

자기역량기술서

* 필요 시 칸을 늘려 작성할 수 있음

1. 지원자 개인 소개 (지원자의 주요 경력사항, 성향 등)

2. 지원자가 경영개선·재창업이 필요한 이유 (신청동기 및 목표, 사업지원자세 등을 작성)

3.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역량을 자유롭게 기술

[별첨3] 사업계획서 ※ 본 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페이지에 첨부파일로 등록

2022년 경영개선·재창업 소상공인 사업화지원 사업계획서

* 필요 시 칸을 늘려 작성할 수 있음

1. 사업개요

성명				생년월일			
신청분류 (택1)	<input type="checkbox"/>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		<input type="checkbox"/> e-커머스 인큐베이팅		<input type="checkbox"/>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최종) 사업장 형태	<input type="checkbox"/> 경영개선	<input type="checkbox"/> 점포창업	<input type="checkbox"/> 비점포창업	업태/종목			
아이디어명 (아이템명)							
주요상품 (서비스)							

* 재창업의 경우 협약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함

1-1. 사업화자금 신청

총사업비	국고보조금(50%)	자기부담금(50%)

* 총사업비(100%) = 국고보조금(50% 이내) + 자기부담금(50% 이상)

1-2. 사업화 추진일정

구 분	○○월	○○월	○○월	○○월
사업화 진행률(%)				

2. 신청업종(아이템) 시장조사

신청업종 (아이템)현황 (경영개선은 사업운영현황)	
고객의 유형 및 특징	1. 지원자의 주요 고객의 특성을 기술 - 지원자의 제품 및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어떤 필요성에 의한 것인지 기술 -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제품 및 서비스는 현재 누구(어떤 고객)에게 가치가 있는지 주요 고객 순으로 현황 기술
신청분야의 경쟁업체(아이템) 현황	1.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가 경쟁업체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기술 (경쟁업체보다 우위인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조건) 2. 동일 업종 별 비교 등 현황분석

3. 신청업종(아이템) 운영방안

- * 기본 제공한 질문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질문 이외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작성 가능
- * 필요 시 항목추가 및 칸을 늘려서 작성 할 수 있음

① 구매(생산)계획	
생산제품 소개 및 서비스 원재료 조달 방법 소개	
② 판매계획	
제품홍보 및 판매전략(경쟁업체와 비교, 차별성 서술) - 판매 방식, 가격구조, 마진구조 등 -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지원자만의 어떤 홍보 및 판매 전략이 있는지 기술 - 현재 또는 계획되어 있는 사업모델이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현재 전략 및 향후 전략 기술	

③ 마케팅(영업)계획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방법·장치 등

- 사업 방식에 따라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
- 고객확보와 고객유지 및 판매촉진을 위한 방안

④ 사업장조성계획

사업장 규모, 임차 여부, 입지, 실·내외 시설 등

- 사업장 입지 확보 여부 포함

⑤ 지원 후 기대효과

사업 지원 후 중장기 계획, 고용창출 등 향후 계획

4. 사업비 집행계획

4-1.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 사업비 편성내역 (필요분야만 작성)

(단위 : 원)

구 분	집 행 항 목	세 부 내 역	금 액	
국고보조금	인증평가			
	매장 모델링			
	브랜드개발			
	제품개선			
	마케팅홍보			
	스마트·디지털			
	온라인판로			
	상품·메뉴개발			
국고보조금(A)				
자기부담금	현금	인증평가		
		매장 모델링		
		브랜드개발		
		제품개선		
		마케팅홍보		
		스마트·디지털		
		온라인판로		
		상품·메뉴개발		
	소계(a)			
	현물	인건비		
		임차료		
		시설설비		
		재료비		
		소계(b)		
자기부담금(B=a+b)				
총 사업비(A+B)				

※ 선정자에게는 사업화자금의 총 사업비 50%(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50%는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부담 1:1매칭)

※ 단, 매장모델링은 국고보조금(정부지원금)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합니다.

※ 총 사업비의 35%까지는 대표 및 직원(채용/협약 전 기 고용) 인건비 및 사업장 임차료 사용분, 시설·설비, 재료비 인정합니다.

※ 자기부담금 중 재료비는 현물 최대금액의 50%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4-2. 특화 인큐베이팅 사업화 사업비 편성내역(필요분야만 작성)

(단위 : 원)

구 분	집 행 항 목		세 부 내 역	금 액
국고보조금	인큐베이팅 특화 프로그램			
	국고보조금(A)			
자기부담금	현금	인큐베이팅 특화프로그램		
		소계(a)		
	현물	인건비		
		임차료		
		시설설비		
		재료비		
	소계(b)			
자기부담금(B=a+b)				
총 사업비(A+B)				

※ 선정자에게는 사업화자금의 총 사업비 50%(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50%는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부담 1:1매칭)

※ 총 사업비의 35%까지는 대표 및 직원(채용/협약 전 기 고용) 인건비 및 사업장 임차료 사용분, 시설·설비, 재료비 인정합니다.

4-3. 자부담금 조달방안

구 분		금 액	구체적 조달방법 및 내용
자부담	자기자본(예금, 보험 등)	원	
	금융기관 대출	원	
	가족, 지인으로부터 차입	원	
	기타 자금조달	원	
	소 계(B)	원	